

기업지배구조헌장



TRINITY AIRWAYS

전 문

주식회사 트리니티항공(이하 "회사")은 최고의 안전운항환경, 합리적인 가격, 정성스러운 서비스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항공사를 지향하며, 고객과 주주,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회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의 초석으로서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모든 이해 관계자의 권익증진 및 기업가치의 제고에 초석을 삼고자 한다.

제1장 주주

제1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 ③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2장 이사회

제4조 이사회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법령·정관이나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를 갖추고, 이사회 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실질적인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하여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 사외이사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④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제7조 이사회 운영

-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사회규정을 제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 ③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하여 이를 유지·보관한다.
-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 ⑤ 회사는 필요한 경우 모든 이사의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가능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 특정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은 각 위원회의 규정으로 명시한다.
- ③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9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

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이사의 책임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감사기구

제11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적법성 검사, 회사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사,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외부 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 등을 수행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 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주요 토의 사항과 결의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 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외부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제4장 이해관계자

제13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①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사회적 책임

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③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④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14조 공시

-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 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적시에 공시한다.
- ②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 ③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 부칙 이 헌장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이 헌장은 2026년 5월 12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